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80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8월 30일 1차상정·검토보고·심사보류】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2차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 1. 제안이유

- 우리사회의 일상적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오랜 남성 중심 역사관에  
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성평등한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여성의 역  
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턱없  
이 부족한 상황임

- 조선시대 여성의 역사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칭) 서울여성역사센터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성평등 서울’ 실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서,
- 여성사 연구, 도서관 운영,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7-26 (시유지)
- 규모 : 대지 968.9m<sup>2</sup> / 연면적 763m<sup>2</sup>(지하3/지상2층)
  - A동(지하1·지상1, 총 376m<sup>2</sup>), B동(지하3·지상2, 총 387m<sup>2</sup>)
  - ※ 근린공원(1,303.8m<sup>2</sup>), 비우당(28.8m<sup>2</sup>), 임야(670.98m<sup>2</sup>) 사용 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A동	지하1층	222.61	여성사 책방(여성사 서적 비치·열람, 여성사 교육프로그램)
	지상1층	153.44	어린이 책방(어린이·유아 서적 비치, 자유롭고 편안한 열람공간)
B동	지상2층	140.81	여성사 전시코너, 안내데스크, 카페(주민공동시설)

비우당	28.8	가족 공동열람실(평시), 소규모 행사 공간
근린공원 등	1,303.8	가족참여 문화(체육)행사 공간

○ 준공일 : 2019. 8월말(예정)

나. 위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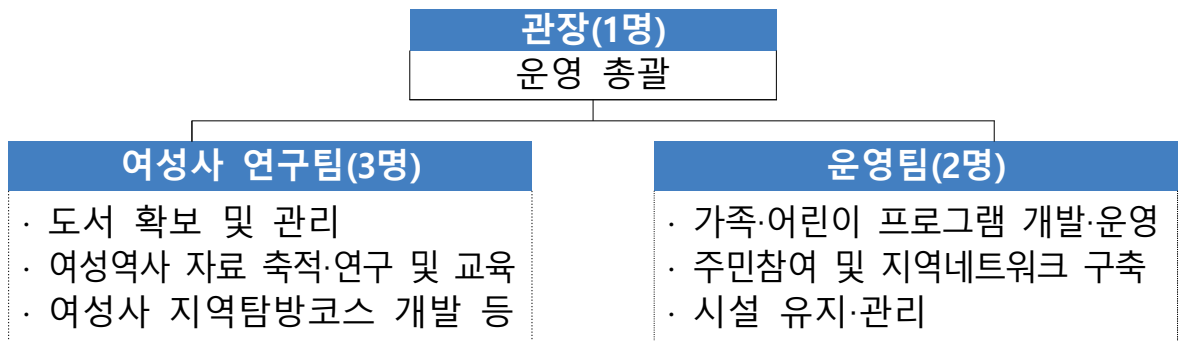
○ 위탁사무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월 ~ 2022. 12월(3년간)

○ 위탁유형 : 시설위탁(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적격자 심의)

○ 조직 및 운영(안)



○ 위탁사무 내용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도서 확보(구입, 기증) 및 관리, 대출, 열람 등

-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여성의 역사, 성평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20년) : 491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 제45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5조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19. 6. 21)
-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적정) 통보('19. 7. 17, 조직담당관-9257)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주기능인 여성역사 관련 도서 수집·관리, 기록물과 자료의 발굴·축적·연구, 여성역사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바, 신규 공무원 채용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

간기관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 가능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5호 생략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도서 확보(구입, 기증) 및 관리, 대출, 열람 등
  -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여성의 역사, 성평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설치 추진 경위 및 추진 현황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는 부족한 여성사 연구 및 관심 확산의 구심점 마련으로 성평등 서울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창신·송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리모델링된 (구)원각사 건물 등에 지역의 여성사적 가치를 반영한 여성사 도서관공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추진경과와 같이 2015년부터 다양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시설조성 추진 경과>

#### (구)원각사 도시재생사업 추진경위 : 도시재생실(주거재생과)

- 창신·송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54호) : '15.2.26
  -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구)원각사 리모델링 추진 결정
- 설계공모(서울시공공건축가 지명경쟁, 경희대 천장환 교수) : '16.8월~9월
- 주민협의체 의견수렴(5회, 42명 참여) : '16.10월~'17.1월
  - 시설용도를 도서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카페 등)로 확정
- 시설설계(설계비 76백만원) : '16.10월~'17.5월
- 시설공사(리모델링 및 증축) : '17.6월~'18.12월
- 주민공동시설 운영자 선정 공모(결과 : 미응모) : '18.4월~'18.5월

#### ※ 미응모 원인(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운영비(전기요금, 승강기유지비, 인건비 등)
- 초기 시설투자비 조달 부담 ⇨ 공공지원 요구

#### ○ 도서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19.1.8

- 구성원 : 12명(전문가 7, 지역주민 3, 공무원 2)
- 역할 : 시설 운영방향, 운영준비,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결정

○ 도서관 사업추진협의회 회의(총7회) : '19.1월~'19.6월

※ 운영주체를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로 지정**('19. 6. 10, 제7차 회의)

- 주민협동조합, 자치구 등에서 운영이 곤란하므로 서울시에서 시설 운영
- 여성의 역사를 간직한 창신3동의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여성사도서관 운영

○ 동 시설은 2019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이후 10월까지 실내 공간조성 및 인테리어 등을 거쳐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을 위한 2020년 예산은 인건비 2억 6천 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천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시설의 규모 및 용도, 운영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음.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사업개요〉

○ 목적 : 부족한 여성사 연구 및 관심 확산의 구심점 마련으로 성평등 서울 구현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7-26(시유지) / 규모 : 대지 968.9m<sup>2</sup>, 연면적 763m<sup>2</sup>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A동	지하1층	222.61	<b>여성사 책방</b> (여성사 서적 비치·열람, 여성사 교육프로그램)
	지상1층	153.44	<b>어린이 책방</b> (어린이·유아 서적 비치, 자유롭고 편안한 열람공간)
B동	지상2층	140.81	지역 여성사 전시코너, 안내데스크, 카페(주민공동시설)
비우당		28.8	가족 공동열람실(평시), 소규모 행사 공간
근린공원 등		1,303.8	가족참여 문화(체육)행사 공간

※ 건물 이외에 근린공원(1,303.8m<sup>2</sup>), 비우당(28.8m<sup>2</sup>), 임야(670.98m<sup>2</sup>) 사용 예정



○ 운영 프로그램(안)

- 여성사도서관 운영 : 장서 대여·열람, 자료 축적·연구, 지역탐방코스 개발, 교육 등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도서관, 문화체육행사 등
- 지역자원 네트워킹 : 주변 시설과 프로그램 공유, 합동 지역축제 개최 등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sup>2)</sup>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sup>3)</sup>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sup>4)</sup>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사적 가치를 반영한 여성사 도서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 서울여성역사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조례」 제4조<sup>5)</sup>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여 도서 확보(구입, 기증) 및 관리, 대출, 열람과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sup>6)</sup>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sup>7)</sup>에서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는 해당 시설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한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역사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바, 본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계획과 집행에 있어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 4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는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사무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 계획과 집행에 있어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0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우리사회의 일상적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오랜 남성 중심 역사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성평등한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여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나. 조선시대 여성의 역사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성평등 서울' 실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서,
- 다. 여성사 연구, 도서관 운영,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7-26 (시유지)
- 규모 : 대지 968.9㎡ / 연면적 763㎡(지하3/지상2층)
  - A동(지하1·지상1, 총 376㎡), B동(지하3·지상2, 총 387㎡)
- ※ 근린공원(1,303.8㎡), 비우당(28.8㎡), 임야(670.98㎡) 사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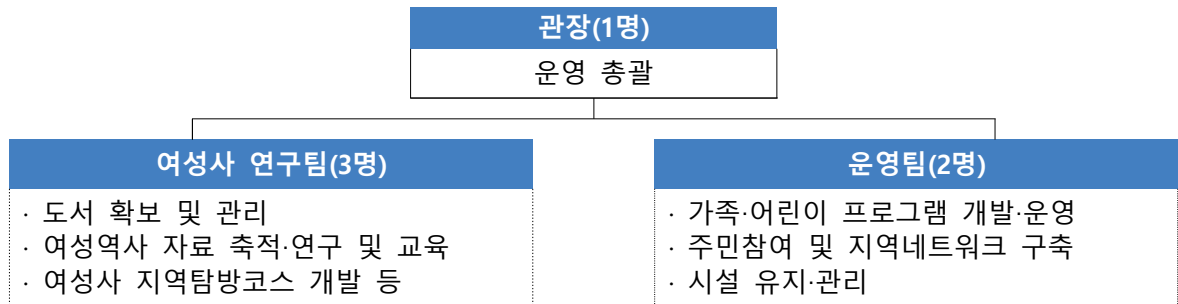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A동	지하1층	222.61	여성사 책방(여성사 서적 비치·열람, 여성사 교육프로그램)
	지상1층	153.44	어린이 책방(어린이·유아 서적 비치, 자유롭고 편안한 열람공간)
B동	지상2층	140.81	여성사 전시코너, 안내데스크, 카페(주민공동시설)
비우당		28.8	가족 공동열람실(평시), 소규모 행사 공간
근린공원 등		1,303.8	가족참여 문화(체육)행사 공간

○ 준공일 : 2019. 8월말(예정)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월 ~ 2022. 12월(3년간)
- 위탁유형 : 시설위탁(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적격자 심의)
- 조직 및 운영(안)



○ 위탁사무 내용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도서 확보(구입, 기증) 및 관리, 대출, 열람 등
-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여성의 역사, 성평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20년) : 491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29조, 제45조
-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5조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19. 6. 21)
-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적정) 통보('19. 7. 17, 조직담당관-9257)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주기능인 여성역사 관련 도서 수집·관리, 기록물과 자료의 발굴·축적·연구, 여성역사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바, 신규 공무원 채용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 가능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5호 생략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성룡(☎2133-5008)